

인권경영 규정

제정

2024. 1.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농구협회 내·외부 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한민국농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관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경기인”이란 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한다.
4. “관계단체”란 전국규모연맹체, 시도종목단체 및 그 지회(시군구종목단체)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협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및 지역주민 등 협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스포츠 참여권 보장) ① 협회는 주요사업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협회는 이사회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 특정성별의 비율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 스포츠 참여 및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경기인 인권 보호) ① 협회는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 제1장 제3조에 따라 올림픽운동의 중심에 선수가 있음을 인식하고, 선수가 중심이 되는 육성체계를 운영한다.

② 협회는 스포츠 활동 전 과정에서 경기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제6조(직원의 인권 보호) 협회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7조(고용상의 차별금지) ① 협회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협회는 비정규직 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③ 협회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노동3권 보장) ① 협회는 직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

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협회는 직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협회는 직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제9조(강제근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협회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② 협회는 아동을 근로자로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아동의 권리) ① 협회는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② 협회는 스포츠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1조(정보인권 보호) ① 협회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스포츠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① 협회는 국내스포츠행사 개최 등에 따른 환경 보존 및 지속적 발전방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② 협회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장) ① 협회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협회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경기인, 협회·관계단체 직원,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14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① 협회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협회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협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협회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5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협회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6조(구제조치) 협회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7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이하 “회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권경영 사무를 담당한다.

1. 인권경영 헌장 제·개정
2. 인권규정 제·개정
3. 인권교육 실시
4. 인권침해 구제제도 및 절차 운영
5. 그 외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인권경영 관련 업무

제18조(인권경영 헌장) 회장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협회 임직원은 인권경영 헌장을 경영

활동 전반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9조(인권경영계획 수립) ① 회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경기인 및 협회·관계단체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제20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회장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21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협회 임직원 및 경기인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회 관계단체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회장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② 회장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점검 또는 장려할 수 있다.

제23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회장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침해 구제

제24조(인권침해 구제절차) 회장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장은 인권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만들어서 이를 공지한다.
2.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경기인, 협회·관계단체 직원, 이해관계자는 협회의 「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차별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회장은 진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한다.
4. 진정제도는 피해자 신분 보호, 언어 장벽, 비용,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제도 이용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제도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5.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4. 1.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2024. 1. 23.)부터 시행한다.